# 2020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(ATC+)사업 사전 공시 안내

2020년도에 첫 시행되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(ATC+)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참고하시어 본공고('20.1월 예정)까지 관심있는 기업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 □ 사업목적

○ 중소·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&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

### □ 지원대상분야

산업부 R&BD 25개 전략투자분야\* 內 자유공모 (각 분야 내 핵심 소재・부품 관련 과제는 우대 예정)

	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	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	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	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·환경
국민 삶의 질 (수요)	·전기수소자동차 ·자율주행차 ·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·차세대 항공 (드론포함)	·디지털 헬스케어 ·맞춤형 바이오 진단·치료 ·스마트 의료기기	· 스마트 홈 · 서비스 로봇 · 웨어러블 디바이스 · 디스플레이 · 지능정보 서비스	· 수소에너지     · 재생에너지     (태양광 · 풍력)     · 지능형 전력시스템     · 청정생산     · 원자력 안전 및 해체
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				
생산(공급)	산(공급) 첨단 신소재, 지능형 반도체, 첨단 제조공정·장비, 스마트 산업기계, 디자인 스마트 엔지니어링, 3D 프린팅			업기계, 디자인융합,

<sup>\*</sup> 본공고 시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경우 지원대상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,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상기와 동일함

# □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구분	우수기업연구소육성(ATC+)		
공고예산	199억원 내외		
	연도별 정부출연금		
지원규모	-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61억원 내외(38개 내외 과제) - 연간 5억원 이내		
	-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38억원 내외(7개 내외 과제) - 연간 7억원 이내		
지원기간	4년 이내		

<sup>※</sup> 공고예산, 지원규모 등은 본공고 시 수정될 수 있음

### □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

#### 1. 신청요건

- ㅇ 다음의 ①,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
  -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 설연구소
  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범위)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"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(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" 기준)
  -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    - 기존 ATC사업, 월드클래스 300 R&D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 신청 불가
    - 기존 ATC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[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]

선정요건	세부내용	
연구인력 8인~30인(전담요원)	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요원 인원만 인정(부속서류, KOITA 발급 기업부설	
한 [ 한국 6년~30년(한남표년)	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)	
R&D 집약도* 2% 이상(2년 평균)	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,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함.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의 인건비는 R&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(인건비 지급조서(급여증비) 등)	
5년 이상 R&D 활동실적 (기업부설연구소 업력)	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**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	

<sup>\*</sup> R&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(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) 상의 대분류 " $C(M \times C)$  10류~33류)", " $J(Z \times C)$  통신업)", " $M(Z \times C)$  및 기술서비스업)"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&D 집약도는 1% 이상으로 함

\*\*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가 발급하는 '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'에 날인된 날(신고일 아님)

### 2. 지원규모

- ㅇ 최대 4년, 연간 5억원 이내 지원
  - 산·학·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,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전체 정부출연금의 60%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

#### 3. 추진방식

- o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·학·연 컨소시엄
  -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·중견기업, 대학, 연구소, 외국대학 국내분 교, 외투기업 R&D 센터 등 참여 가능

#### 4. 지원내용

o 전략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,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

#### □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

- o 다음의 ①,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
  - 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
  -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범위)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"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(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" 기준)
  -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    - 월드클래스 300 R&D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신청 불가 [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]

선정요건	세부내용		
연구인력 8인~30인(전담요원)	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요원 인원만 인정(부속서류,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)		
R&D 집약도* 4% 이상(2년 평균)	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,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을 인정함.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원의 인건비는 R&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 (인건비 지급조서(급여증비) 등)		
5년 이상 R&D 활동실적 (기업부설연구소 업력)	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**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		

<sup>\*</sup> R&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(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) 상의 대분류 "C(제조업, 10류~33류)", "J(정보통신업)", "M(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)"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&D 집약도는 2% 이상으로 함

<sup>\*\*</sup>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가 발급하는 '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'에 날인된 날(신고일 아님)

#### 2. 지원규모

- o 최대 4년, 연간 7억원 이내 지원
  - 산·학·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,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전체 정부출연금의 60%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

#### 3. 추진방식

- o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지원
  - 참여기관으로 해외 연구기관(산학연)은 필수이며, 별도로 국내 중소·중견기 업, 대학, 연구소, 외국대학 국내분교, 외투기업 R&D 센터 등 참여 가능
    - 국내(주관기관) + 해외(참여기관, 필수) + 국내(참여기관, 선택)
  - 사업 신청시 해외기관/기업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(공동연구 범위, 교류계획,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)을 반드시 제시
  - 글로벌협업연구센터(Collaboration-center):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 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/장비,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(국내) 구축
- ㅇ 해외 연구기관(산학연) 연계지원(첨부1~5참고)

해외 연구기관 연계지원			
지원기관	내용	문의처	
한국산업기술진흥원 (KIAT)	GT(Global Tech) online을 통한 원스톱 플랫폼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연계지원(첨부1) (gtonline.or.kr)	1811-9595  EEN(유럽 기술협력 네트워크), GCC(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), K-TAG(해외 한인공학자) 등 해외 기술협력 종합 상담	
한국이스라엘산업 연구개발재단	이스라엘 연구기관과 연계지원(첨부2)	최수명 팀장 smchoi@koril.org	
ATC 협회	특허검색솔루션 활용을 통한 해외협력 R&D 파트너 매칭지원(첨부3)	이선미 과장 02-6009-3551 smlee@atca.or.kr	
프라운호퍼 코리아	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연계지원(첨부4) (www.fraunhofer.kr)	최자원 책임 02-420-3027 jawon.choi@fraunhofer.kr	
KEIT 해외사무소	KEIT 해외사무소를 통한 미국 및 유럽 연구기관 연계지원(첨부5)	(미국) 김병재 책임 rarmy78@keit.re.kr	
		(유럽) 전준표 선임 augtto@keit.re.kr	

#### 4. 지워내용

- o 전략육성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술개 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, R&D 기획/관리 시스템 구축, 해외연구 인력 유치(인건비 및 체류비),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 료비 일부를 지원
  - (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) 해외 우수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 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·중견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와 체류비(연간 2개월 이내, 최대 3천만원) 활용을 의무화
  - (글로벌협업연구센터 구축) 해외 우수연구그룹과의 협력성과 창출을 통한 국 내 기업연구소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밀착형 협력연구 및 교류 등을 위 한 연구거점을 국내 주관기관에 구축
    - 선정기업과 국내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가능한 연구센터(연구시설·장비), 원격회의실 등 협업공간과 함께 지식자산 관리·공유시스템을 조성
    -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&D혁신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센터의 4대 역량(연구역량, 협력네트워크, 연구성과 및 선전 R&D시스템) 업그레이드
    -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약(공동연구 범위, 연구비 대응규모, 공동 IP Pool 구축 및 IP 소유권한, 수익공유형 Business Model 등 포함)이 필수

## □ 통합패키지 지원사업

○ 우수기업연구소육성(ATC+) 사업 수행 시 통합 지원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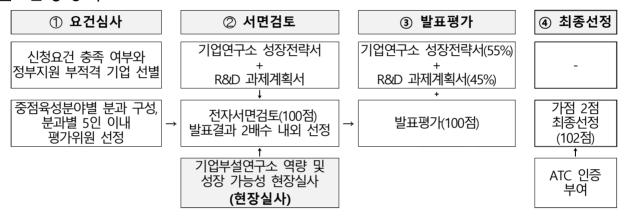
지원기관	지원사엄	지원내용	담당자
한국특허전략개발원 (KISTA)	IP R&D (9개월 소요)	- R&D 맞춤형 IP 전략수립	김효선 그룹장 02-3287-4221
	특허기술동향조사 (3개월 소요)	- 특허 장벽 대응 및 회 피 방안 제공 - 특허 관점 R&D 방향성 제시	이승은 그룹장 02-3287-4303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KOITA)	이공계인력중개센터	이공계 연구·개발 인력의 취업지원 www.rndjob.or.kr	한고은 주임 02-3460-9121 job03@koita.or.kr

### □ 연계지원사업

주관기관	지원사엄	사업내용	담당자
한국특허전략개발원 (KISTA)	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&D-先기획 지원사업	선행특허조사 무료지원	이승은 그룹장 02-3287-4303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KOITA)	우수기업연구소 지정	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ATC+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	이동주 부장 02-3460-9026

- \* (지원 규모) 50개 내외의 기업 지원(선착순 지원)
- \* (신청방법 등) www.kista.re.kr → 사업정보 → ATC+사업 지원예정 기업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&D-선기획 지원사업 공고

# □ 선정평가



### □ 문의처

담당자	전화번호	e-mail
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	053-718-8467	kjpark@keit.re.kr

# □ 설명회 일정

- ㅇ 온라인 설명회 개최
  - KEIT YOUTUBE 채널 이용
- 오프라인 설명회 (상세 일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)
  -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(학회, 협회, 지역TP, 산단공 등 설명회 요청접수는 문의처)